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4시간 신고접수)

신고전화시 가장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결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6 제2항)
-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 12항,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상세 직군은 뒷면 참고

노인학대 신고 방법

1단계) 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

- 노인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노인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노인학대 가능성 파악
- 응급상황 시 노인 안전 우선확보



2단계)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129)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노인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단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노인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 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 학대 예방! 관심에서 시작 됩니다

I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신고의무자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12항]

II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III 노인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 ☎ 1577-1389, 129

사례1)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는 아들이 폭행한 어르신 사례

학대피해노인은 아들로부터 10여 년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 왔으며, 다소 학대상황에 무감각한 경향을 보였음. 빈번한 학대로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접수하게 되었음. 학대피해노인의 주 욕구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일시보호 조치 후 원가정 복귀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였음. 이에 공격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학대행위자의 자의 입원을 도출하였고, 생활고 회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선정을 도모함.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보호망을 지역사회자원을 활용·구축하여 원가정 복귀 및 회복이 이루어지며 종결하게 되었음.

사례2) 재산을 탕진한 자녀가 유기·방임한 노부부

본 사례는 노부부가 여관에서 살면서 사용료를 1년 가까이 체납하자 여과주인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할머니는 심각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고 할아버지는 특별한 수입도 없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임에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며 여과주인이 도움을 요청하였음.

현장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학대피해노인과 면담결과 두 아들이 학대피해노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갈 곳도 없어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함.

즉시 노부부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하고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치매노인 의료적 조치 후 향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의 적극적 인협조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치매인 학대피해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시설에서, 남자학대피해노인은 척추질환으로 병원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게 됨. 사후관리를 통해 잘 적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의 형제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함.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계신가요?

‘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더 이상 지켜보지만 마세요. 1577-1389, 129로 신고 전화 주세요. 당신이 노인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